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에 따라 우리 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4조)
  - 도지사의 도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의무(제1항)
  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(제2항)

## 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 안전 업무의 전문적·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.
- 상위법률인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에서 임의규정이었던 ‘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’가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 의무규정으로 개정(2022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위 센터 설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바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최근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률에서 도지사의 센터 설치 근거를 의무화한 만큼 건축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염두에 두고 내실화 있는 센터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